

부산지방법원 2021. 5. 27 선고 2020가단9141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2. 8. 19 선고 2021나52815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21. 5. 27 선고 2020가단9141 판결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1. 3. 18.

판 결 선 고 2021. 5. 2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53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

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없거나 40,000,000원이고, 일부 변제하는 등 하여 채무 원금은 20,000,000원에 불과함에도 채무가 존재한다고 착오하여 피고에게 53,500,000원을 지급하였다. 따라서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을 수령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전액 또는 32,210,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- 1) 원고 대표자 사내이사 D은 2017. 1. 25. 주식회사 E으로부터 밀양시 F, G 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매매대금 270,000,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,000,000원은 계약 당일, 잔금 230,000,000원은 2017. 2. 10. 지급하기로 정하였다.
- 2) 매도인 주식회사 E은 원고 측에 계약금 50,000,000원 중 40,000,000원은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, 10,000,000원은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.
- 3) D은 2017. 1. 26. 피고로부터 50,000,000원을 이자 연 27.9%, 변제일 2017. 2. 25.로 정하여 차용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.
- 4) 피고는 2017. 1. 26. 주식회사 E에 40,000,000원을, 주식회사 H에 10,000,000원을 각 이체하였다.
- 5) D은 2017. 2. 3. 원고를 설립하였고, 원고는 2017. 1. 26.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. 2. 28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- 6) 피고는 2017. 1. 26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,000,000원, 채무자 D인

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, 2017. 6. 13. 원고로부터 53,500,000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을 제1 내지 6, 9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관련 법리

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.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, 취소,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·증명하여야 하고,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·증명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8. 1. 24.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).

다. 판단

원고는 피고에 대한 차용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차용금액 및 변제 여부에 대해서만 피고와 다투고 있다.

먼저,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(을 제1호증)에 계약금이 ‘40,000,000원’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에서 인정한 바와 달리 차용금이 40,000,000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.

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D이 2017. 3. 23. I에게 20,000,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, I이 2017. 2. 20. 이 사건 토지 100분의 4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17. 3. 28. 위 가등기말소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에게 지급한 돈을 피고에 대한 변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50,000,000원 및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53,500,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.

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, 원고의 이

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우경아